

미래전략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스퀘어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회 산하 미래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 3. 27.>

제2조 (적용범위)

미래전략위원회에 관하여는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25. 3. 27.>

제3조 (구성 및 위원 선임)

- ① 미래전략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독립이사를 과반수로 한다. <개정 2025. 3. 27.> <개정 2026. 3. 25.>
- ②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 <개정 2025. 3. 27.>
- ③ 미래전략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. <개정 2025. 3. 27.>

제4조 (위원장)

- ① 미래전략위원회는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둔다. <개정 2025. 3. 27.>
-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

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.

제5조 (권한)

① 미래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5. 3. 27.>

1. 정관, 기업지배구조헌장,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정의 제·개정
2.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미래전략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최종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하며,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<개정 2025. 3. 27.>

③ 미래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받고 토의한다. <개정 2025. 3. 27.>

1. 회사의 중장기 미래전략
2. 전사 핵심성과지표(KPI) 및 KPI 성과 평가
3. 기타 미래전략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<개정 2025. 3. 27.>

제6조 (소집)

① 미래전략위원회는 개최의 필요성이 있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5. 3. 27.>

② 미래전략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5. 3. 27.>

제7조 (외부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)

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8조 (의사록)

- ① 미래전략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3. 27.>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9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2021. 11. 25.)

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3. 27.)

이 규정은 2025. 3. 28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 3. 25.)

이 규정은 2026. 7. 23.부터 시행한다.